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88호 2019. 5. 20.(월)

공 고

○ 2019~20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 2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19-698호

2019~20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2019~20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시 수산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0 일

목 포 시 장

1. 2019~20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개 발 유 형	신 청 (건/ha)	승 인 (건/ha)	불 승 인 (건/ha)
합 계	4 / 244.65	3 / 170.15	1 / 74.5
재 개 발	1 / 58.2	1 / 58.2	-
대 체 개 발	3 / 186.45	2/111.95	1/74.5

※ 개발계획 도면은 지면 관계로 우리시 수산진흥과에 비치

2.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 기간 :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 접수기관 : 목포시청 수산진흥과 (☎ 061-270-3413)

붙임 1. 2019~20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조건 1부.

2. 2019~20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과 1부.

3.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1】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조건

- 조건부 승인의 경우, 반드시 조건을 충족 후 면허 처분한다.
- 수면의 위치가 바뀌거나 신규 승인된 양식장은 반드시 “국립수산물 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에 의한 적지조사를 실시한 후 적지 판정 시 면허 처분한다.
- 수면을 신규개발하거나 재개발 또는 대체개발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면허 처분한다.
- 대체개발은 기존 어업권 포기 수리(축소) 및 시설물과 양식 폐기물 등을 완전히 철거하고, 확인한 후 면허 처분한다.
- 어장(어업)분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전 분쟁요인을 조정(해소) 한 후에 면허 처분한다.
- 시군 간 경계수역, 향로 등은 인근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면허 처분한다.
- 어업면허 처분 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양식 어업의 종류별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양식방법 등을 준수한다.
- 국가 공공사업이나 공공시설 등이 예상된 수역은 관계기관장과 협의나 동의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개발 계획이 고시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개발이 예정된 수역은 반드시 협의 및 동의를 득한 후, 면허 처분한다.

【붙임 2】

'19~'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과

목포시								
어업별	양식방법 (품 종)	수면위치	도면 번호	신 청 (건/ha)	승 인 (건/ha)	불승인 (건/ha)	개발유형	사유(조건)
합 계				4/244.65	3/170.15	1/74.5		
해조류 양식	소계			2/111.95	2/111.95	-		
	건홍식 (김)	율도동 율도지선	1	1/99.95	1/99.95	-	대체개발	조건부 승인 (양식장 적지조사 후 결과에 따른 면허처분) ※ 해조류양식제10056호 포기, 확대 개발(95.25ha→99.95ha)
	건홍식 (김)	연산동 광산지선	3	1/12	1/12	-	대체개발	조건부 승인 [한정면허(양식장 적지조사 후 결과에 따른 면허처분. 향후 삼진항 개발 시 피해보상 요구는 할 수 없으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자진 철거 조건, 국가어항 삼진항개발 예정구역 바깥쪽으로 어장 이설] ※ 해조류양식제10057호 어장 재배치 (기존과 같이 한정면허로 처분)
복합 양식	소계			1/74.5	-	1/74.5		
	건홍식과 살포식 (김,바지락)	율도동 율도지선	2	1/74.5	-	1/74.5	대체개발	불승인 - 복합양식과 해조류양식 어업권 합병 불가
마을 어업	소계			1/58.2	1/58.2	-		
	도수,나잠 (수산 동식물)	달동 외달지선	4	1/58.2	1/58.2	-	재개발	승인 - 기존 마을어업 제2014호 2019년 9월 5일 기간만료되어 재개발

【붙임 3】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4.>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 적	
	주 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양 식 방 법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합니다)
 - 나.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합니다)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수산업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합니다)
 -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